

제299회 임시회  
2011. 4. 21.(목)

# 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  
산업경제위원회

「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2011. 4. 21. (목)

산업경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박문희 의원 외 6명

나. 발의일자 : 2011년 4월 4일

다. 회부일자 : 2011년 4월 7일

라. 상정일자 : 2011년 4월 13일

(제2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박문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신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등으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 도의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모범적으로 이바지한 우수 중소기업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운용중인 충청북도 중소기업 대상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의 정비(안 제1조, 안 제2조)
-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(안 제5조, 안 제8 ~ 안 제10조)

### 3. 검토보고 요지

(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: 민병완)

- ‘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의 정비와 현실에 맞게 일부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**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신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등으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충청북도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모범적으로 이바지한 우수 중소기업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를 제외한 제목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시상분야)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(이하 “대상”이라 한다)의 시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제4조제3항 중 “도지사”를 “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기업지원과장”을 “기업지원을 담당하는 과장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홍보를 위해 언론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9조 중 “정부포상규정”을 “정부포상업무지침”으로, “충청북도포상

조례”를 “ 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 ”로 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실비변상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신기술 개발 및 생산성향상 등으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충청북도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모범적으로 이바지한 우수 중소기업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(이하 “대상”이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신기술 개발 및 생산성향상 등으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충청북도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모범적으로 이바지한 우수 중소기업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2조(시상분야) 대상 시상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	<p>제2조(시상분야)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(이하 “대상”이라 한다)의 시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위원회 설치) ① ~ ② (생략)</p>	<p>제4조(위원회 설치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③ 위원은 중소기업 관련기관, 학계, 언론계 등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<u>도지사</u>가 위촉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③ ----- ----- -----<u>충청북도지사 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</u>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회의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<u>기업지원과장</u>이 된다.</p>	<p>제5조(회의) ① ~ 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<u>기업지원을 담당하는 과장</u>-----.</p>
<p>제8조(홍보 등) ① 대상의 공정성과 홍보를 위해 언론사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8조(홍보 등) ① 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홍보를 위해 언론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준용)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<u>정부포상규정</u> 및 <u>충청북도포상조례</u>를 준용한다.</p>	<p>제9조(준용) ----- -----<u>정부포상업무지침</u> --「<u>충청북도 포상조례</u>」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제10조(실비변상)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	제10조(실비변상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

## 관 계 법 령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